

2025년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

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「베이비부머 라이트잡」 사업을 공고하오니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7일

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베이비부머 라이트잡

나. 사업내용

-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, 1인당 월 40만원씩 신규 채용자에 소요되는 4대보험료, 교육훈련비, 근로환경개선 비용 지원

다. 지원규모 : 총 2,000명(채용 선착순)

라. 지원내용 : 신규 채용 1인당 월 40만원 지원

- 지원금 신청 : 매 출수 달(5, 7, 9, 11월) 10일까지 지원금 신청

- 지원금 지급시기 :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~ 익월 초

※ 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안내, 11월 분 지원금은 12월 3일까지 신청

2 지원조건

가. 참여기업 자격 : ①~④ 조건을 모두 충족

- ①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및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
※ 신청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(지점)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, 기업당 적용하는 채용 인원 한도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
- ②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
- ③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
※ 인위적 감원 사실 확인: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번호 "23 ①~⑥", "26 ③"
- ④ 아래 참여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<참여 제외대상 기업>

-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
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
- ③ 일반유희·무도유희·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
* 사업주 확인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⑤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, 기관, 단체 등
- ⑥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
- ⑦ 근로자 파견업종
- ⑧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금 사업 등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(예시: 요양, 운송, 보건, 어린이집 등)

※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은 평가 점수 20% 감점, 예비선정 후 범위반 사실 일괄조회함, 범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범위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선정 취소 및 타 사업 참여 제한

- ▶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- ▶ 감점대상 처분결과 :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- ▶ 위 11개 법률 위반한 후 감점대상이 되는 처분결과를 받은 경우 범위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(기업이 범위반 행정 처분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)
- ▶ 범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
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범위반조회발급/범위반사실조회)
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

나. 채용대상자 자격

-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* 50세 이상 64세 이하** 대한민국 국민
 - * 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
 - ** 1960년~1975년 출생자
- 채용기업 모집 공고(2025. 2. 17.)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
- 주 24시간~주 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
- 근로계약 기간 만 3개월 이상으로 체결
- 아래 채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채용 제외대상>

- ① 사업주(법인은 대표이사)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
- ② 2025년 내 채용기업에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

다. 지원금 지급 요건

- (임금수준) 2025년 최저임금* 이상

* 시급 10,030원 적용 예시

구분	주 24시간	주 30시간	주 35시간(최대)
근로시간	월 126시간	월 157시간	월 183시간
월 임금(이상)	1,263,780원	1,574,710원	1,835,490원

- (임금지급) 기업에서 라이트잡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 지급
- (지원기간) 채용일~2025. 11. 30.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기간
 - * 단 11월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는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함
- (지원한도) 기업당 최대 10명 예정
 - 고용보험 피보험자 31인 이상 기업 : 최대 10명
 - 고용보험 피보험자 11인~30인 기업 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% 이내
 - * 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× 30%), 소수점 첫 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
 -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하 기업 : 최대 3명

고용보험 피보험자 수	지원 가능 최대 인원	고용보험 피보험자 수	지원 가능 최대 인원
1~10명	3명	21~23명	7명
11~13명	4명	24~26명	8명
14~16명	5명	27~30명	9명
17~20명	6명	31명 이상	10명

- (기업의무)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게 교육 제공 필수
- (지급순위) 사업참여 선정 후 채용근로자 정보를 제출한 순서
- (지급방법) 기업의 분기별 신청에 의해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
 - *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하며, 예산이 소진된 경우 미지급함

3 신청방법

가. 기업 모집기간 및 지원 절차

절차	내용	플랫폼
기업 신청서 제출	접수기간 : ~2025.4.30(수)까지(2,000명 채용 완료 시 조기마감) * 잡아바어플라이 가입 및 신청 (기업 대표자 명의로 가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능)	잡아바어플라이
기업 예비 선정	적합성 심사 후 예비 승인(심사항목: 경기도 소재 여부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1명 이상, 인위적 감원 없음, 신청 사유 타당성) * 잡아바어플라이 시스템 상 선정 처리	잡아바어플라이
근로자 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선정된 기업은 잡아바채용관, 잡아드림(앱)에 채용공고 자동 등록됨 ✓ 당근에 채용공고 무료 등록 가능(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바우처 자동 발급, 별도 신청 불필요) ✓ 민간채용플랫폼 등 기타 수단을 활용한 자율 채용 가능 ✓ 고용24에 채용공고 등록을 위한 구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구인등록시 인증기관 <경기중장년내일센터>으로 선택 ✓ 경기도일자리재단,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구직자 매칭 제공 	잡아바 잡아드림(앱) 당근(앱) 고용24
최종 선정	범위반 여부 조회(경기도에서 관할 행정청에 의뢰) 후 최종 승인 * 잡아바어플라이 시스템 상 선정 처리	잡아바어플라이
지원금 지급	분기별 신청 서류 제출 및 일자리재단 검토 후 지원금 지급	잡아바어플라이

○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

<p>‘잡아바어플라이’ 검색하여 누리집 접속 후 ‘라이트잡’ 검색</p> <p>또는, 신청 누리집 바로가기 https://m.site.naver.com/1Ae4f</p> <p>또는, 오른쪽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접속</p>	
--	---

○ [필수]제출서류 * 1개의 파일로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 등록란에 올리기

- ① [온라인 작성]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- ② [붙임1 서식] 기업의 범위반사실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③ [붙임2 서식] 기업의 범위반 사실(또는 부존재) 약약서 1부
- ④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
- ⑤ 2025. 1. 1.부터 신청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
-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나. 근로자 채용

- 자체 채용 또는 일자리재단, 경기중장년내일센터 등 알선 채용
- 근로계약 체결 후 일자리재단으로 통보(예산 소진 시 통보 순 마감)
 - ※ 공고일 이후 선정된 기업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근로자 근로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함
- 채용한 근로자 정보 잡아바어플라이에 온라인 입력
- [필수]제출서류

- ① 사업주 확인서(일자리재단 제공 양식)
- ② 근로계약서(4대보험 취득 신고일자과 근로계약일이 일치해야함)
- ③ 신규채용 근로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④ 신규채용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*
- ⑤ 신규채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2025년 1월 이후)
- ⑥ 기타 근로계약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 가능

* 채용시점에 경기도민이 아닐 경우,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경기도 전입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재제출하여야 함

다. 지원금 신청

- (신청방법) 기업 전담 매니저 검토(이메일) 후 온라인 신청
- [필수]제출서류

- ① 채용지원금 지급 신청서(잡아바어플라이 온라인 신청)
- ② 사업자등록증
- ③ 월별 임금대장(급여명세서)
- ④ 임금 지급 증빙서류(급여이체내역서 등)
- ⑤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출근부 등)
- ⑥ 근로자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교육일지, 수료증 등)
- ⑦ 기업 통장사본

○ 채용지원금 신청을 위한 근로자 필수교육

- 교육 시기 : 매월 1회 교육 이수

※ 단, 기업의 사정에 따라 평균 월 1회 이상 교육이수도 인정

- 교육과정

근무기간(예시)	근무기간 내 필수 이수 교육 (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)
2025. 3.~5.	1. 산업안전보건교육 3시간 2. 자율교육(직무) 1시간 3. 자율교육(소양) 1시간
2025. 6.~8.	1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시간 2. 자율교육(직무) 2시간 3. 자율교육(소양) 2시간
2025. 9.~11.	1.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시간 2. 자율교육(직무) 2시간 3. 자율교육(소양) 2시간

4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

가. 기업 선정 취소 기준: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

-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(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)
- 참여자격 제외 기업 또는 부적격 근로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

나. 지원금 지원 중단 기준

-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단이 안내한 기한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
- 이 외 참여기업 및 참여자의 자격이 해당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
5 참여안내 및 문의

-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중장년일자리팀 031)270-9941